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2. 10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11.1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8.11.20.

다. 상정일자 :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(2018.12.10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건설관리과장 오승준】

가. 제안이유

본 개정안은 「도로법 등」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비하여 관련근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(도로법등) 개정 내용 반영 일부 조문 정비

- 초과 도로점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(안 제4조제1항)

- 개정법규명 정비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)

- 점용료 산정기준 근거조항 포괄적으로 규정, 삭제된 조정산식 반영,
연간 점용료 증가율 상한액 설정(안 제6조제1항)

-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기준액 상향, 점용료 반환기준 구체화
(안 제9조제1항)

○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추가

- 대상시설물에 ‘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’ 를 추가하고 ‘신·재생 에너지 설비’ 를 신설 (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)

○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[별표1] 개정 및 신설

-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 산정요율을 토지가격에 ‘0.01’ 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‘신·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 산정요율’ 신설

○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안은 「도로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
- 제2조(도로점용허가)제2호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‘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’ 를 추가하고, 제4호 ‘신·재생 에너지 설비’ 를 신설하여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을 구체화 하였고
- 제4조(점용료 등의 부과·징수)개정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 뿐만 아니라 초과 점용자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.

○ 또한,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[별표1] 개정 및 신설하여 생활 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 산정요율을 토지가격에 ‘0.01’ 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납부자 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‘신·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 산정요율’ 신설한 개정안은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가하는 규제에 해당 하지 않고,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